

성소수자 주거지원 매뉴얼



성소수자 주거지원 매뉴얼을 펴내며 3p

상담자의 관점 7p

1. 성소수자 주거 상담
-

사례 유형 / 상담 가이드 13p

성소수자 주거 불안 사례 유형 및 정책 제안

1. 일상에서 겪는 주거 불안
 2. 주택임대차계약 상황에서의 사례 유형
 3. 정책과 제도 이용에서의 사례 유형
-

관련 기관 및 단체 33p

성소수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제안 37p

1. 사회적 소수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2. 성소수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
3. ‘가족’ 개념의 확장을 통한 성소수자 사회권 보장
4. 성소수자에 대한 주거지 박탈 및 임차 거절 등의 차별 행위 금지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는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는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을 공론화하고 이들의 주거권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처한 주거 불안의 맥락과 경로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주거권 운동 단체와 함께 성소수자 주거권 운동을 엮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는 ‘민달팽이유니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모인 청년 세입자들의 당사자 연대로서, 청년 대상으로 주거교육과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민간임대차 및 주거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인 청년 당사자의 문제에 함께 대응합니다. 회원모임 및 연대활동을 통해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배제에 함께 대항하며, 돈벌이 수단이 아닌 권리로서의 집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www.minsnailunion.net)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땡땡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www.ddingdong.kr)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2003년 용산에 자리 잡은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로서,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등록/미등록 이주민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노숙인 등 용산에 거주하는 가난한 이웃들의 생활과 인권을 개선하는데 함께해 왔습니다. 현재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과 성소수자의 주거권 그리고 긴급 생계·의료 지원에 집중하며,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컬러풀 커뮤니티’를 꿈꿉니다.

(www.ysnanum.or.kr)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움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청년 활동가 단체입니다. 다움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청년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성소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https://dawoom-t4c.org>)

성소수자 주거지원 매뉴얼을 펴내며

2018년 방한했던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한국의 성소수자가 처한 주거권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 커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임차권에 대한 승계권을 가질 수 없고,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 불일치로 인해 주택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지정 성별로 분리된 쉼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그동안 잘 얘기되지 못했던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을 언급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단편적인 사례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의 다층적인 양상과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논의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단체(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가 2020년부터 2021년 봄까지 성소수자가 어떤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지, 이 주거 불안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은 이성애 규범 중심의 사회관계, 성별이분법 공간 체계, 그리고 정상 가족 중심으로 이뤄진 주거정책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성소수자들은 이성애 규범 중심의 사회관계에서 아웃팅 위험에 시달리며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불안은 원가족 집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많은 성소수자에게 원가족 집은 따뜻함과 애정을 나누는 공간이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하는 공간으로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언제든지 부모와 형제들에게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자신의 행동을 단속해야 하는, 어찌 보면 항상 불안과 긴장의 장소로 원가족 집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이 주거 불안은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들을 둘러싼 이웃 관계는 원가족 집에서의와 같이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단속해야 하는 불안과 긴장을 심어 놓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소수자들은 기숙사, 고시원, 쉼터 등 성별이분법으로 운영되는 다중 주거시설에 거주할 기회가 제한되며 주거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주거 불안은 트랜스젠더가 많이 겪습니다.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과 현재 자신이 인지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남/여 이분법 공간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별정체성 문제로 탈가정을 해야만 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나 고시원과 같은 공간이 선택지에서 제외되며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커플의 경우 정상가족과 혈연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에서 배제되며 주거의 이동 기회를 박탈당하고 주거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국내 주거정책은 인구 재생산을 위해 정상가족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성소수자 가구, 비혼 가구와 장애인 가구 등은 당연히 주거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안정적인 주거에 관한 전망을 어렵게 하며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은 많은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들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 내에 주요한 의제로 문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불안정한 주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동원해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공간이라 말하며 사적인 재산으로서 집을 강조합니다. 이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주거권을 말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소수자 주거권을 공론화하기 위해 만난 성소수자 단체들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여태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주거 불안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차별과 권리의 문제로 확장하기 힘들었다고 말이죠.

집은 사적인 것과 더불어 공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1991년에 발표된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4호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며, “연령, 경제적 지위, 집단 또는 기타 다른 이와 관계 또는 신분 및 기타 요인 등과 관계없이 적절한 주거권을 누릴 권한”이 있고, 특히 “적절한 주거권의 향유는 어떤 형태의 차별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적인 자원이고, 동시에 시민들이 요구해야 하는 집합적 권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권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챙기고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대표적인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화되지 못했던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을 공론화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첫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은 성소수자들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 불안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거상담센터들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주거 불안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상담 요령, 그리고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첫 시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뉴얼의 내용이 어설피지만 그래도 주거복지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주거복지 현장에서 표상되지 못했던 성소수자들이 이 매뉴얼을 계기로 적절한 주거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주거 불안은 이성애 규범과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주거 정책 등 구조적 차원의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주거권을 얘기하는 것은 단지 안정적인 거처를 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기존 질서를 극복하는 시도이고, 새로운 것을 상상하며 요구하는 실천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매뉴얼이 성소수자의 주거권이라는 합성의 첫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상담자의 관점

성소수자 주거 상담

여기서는 성소수자 주거 상담에서 상담자가 유념해야 할 점, 주의할 점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들이 꼭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날 때만 적용해야 하는 지침들은 아닙니다.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전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일상의 언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성에 대해 생각을 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한 발짝이 됩니다.

1) 성소수자 주거 상담의 특징

성소수자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수자라는 말은 꼭 숫자가 적은 집단만이 아니라, 이른바 '정상성'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제도적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성소수자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있는 그대로 긍정, 수용 받을 수 있는 지지망이 부재합니다. 특히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과 성 정체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소수자 내담자들이 주거를 구하거나 독립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인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내담자는 또한 아웃팅에 대한 불안 등으로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나('여자친구/남자친구 있으세요?', '결혼 생각 있어요?', '여자분인데 머리 스타일은 남자 같으시네요.' 등) 불평등한 대우를 직간접적으로 겪어오면서 생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초기 라포(rapport)가 형성되기 전에 방어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상담자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미리 판단해 말을 걸기보다는 이곳이 '안전한 공간(safe place)'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상담실에 성소수자 지지자(엘라이, ally)나 안전한 공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여두는 것도 쉽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인 용어 세 가지

아래 세 가지 개념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조항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상담 과정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나 커뮤니티와 관련된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괜찮다면 설명해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gender)의 경험으로, 이 경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내과적, 외과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외형이나 기능을 변형하는 것도, 자유로이 선택된 것이라면 포함할 수 있다)이나, 의상, 말투, 버릇 등 기타의 젠더 표현을 포함한다.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이성, 동성 혹은 양성 모두에게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

지정성별 (출생성별 / Sex assigned at birth, assigned sex)

출생시 성기 모양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법적, 의료적으로 지정받은 성별.

시스젠더

지정성별과 같은 성별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성 정체성을 폭로하거나,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시기 또는 방식으로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일.

트랜스젠더

지정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 따라서

트랜스젠더에는 트랜스젠더 여성(MTF,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남성(FTM, female to male)은 물론, 더 다양한 성별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논바이너리(non-binary), 젠더퀴어(genderqueer)도 포함될 수 있다.

성소수자 당사자가 자신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자발적으로 밝히는 일.

(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9: 20).

3) 처음 만나 사례를 파악할 때

다음은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와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년에 함께 제작한 <청년주거상담매뉴얼>에 포함된 'STEP 1. 기초정보 파악'의 내용 중 '사람에 대한 정보'에 관한 파트입니다.

특히 성별과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발췌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

특히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에서는 '정상성'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의 구조와 개인의 삶의 모습, 그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청년 세대임을 인지하고, 편견과 차별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작은 말과 행동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연령

큰 틀에서 '청년' 세대의 특징을 띄고 있지만, 겪고 있는 문제들이 특정 연령을 경계로 명확히 구분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별

특히,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음에 유의합니다.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는 성별을 물어볼 때 아래와 같은 선택지를 권장합니다.

①여성 ②남성 ③본인이 생각하는 성을 직접 기입하고 싶음 ④응답하고 싶지 않음

현재 상태

대학생 등 학생인 경우, 아르바이트 / 구직중 / 전일근로 등의 경제활동 형태 등

※ 특히, 구직 기간이 오래되고 있는 경우/높은 주거비 등으로 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경제적 독립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한 청년의 경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높기는 하지만, 대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 역시 그렇습니다.

거주형태

독립 경험 여부, 공간공유(룸메이트/하우스메이트 등) 형태 등

연락처

지속적인 상담과 추후 정보 제공을 위하여 파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때 무조건 최소한의 정보를 받기보다는, 추후 유의미한 연계와 소통이 이어져 상담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통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정보는 같되, 성소수자 내담자의 경우 상담 내용의 비밀보장에 대해 더 강조하거나, 달리 고민 또는 걱정되는 바는 없는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담을 진행할 때

아래 내용은 2018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쌤’과 함께 제작한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중 발췌한 내용을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들어주세요

자기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중요한 일은 ‘듣는 것’입니다. 편견없이,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소수자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내도 될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들어주세요.

2) 비밀을 지켜주세요

특나에게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기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친구나 지인, 가족, 주거 지원시 만나는 다른 기관 종사자 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도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는 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내담자는 상담소가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성소수자에 대해 이해가 높은 기관이나 사람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전에 꼭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주세요. 좋은 지지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3)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을 인식하세요

좋은 지지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인지하고 이를 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연중에 갖고 있는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 트랜스포비아(트랜스젠더 혐오), 이성애중심주의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늘 조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계속 배우세요

좋은 지지자는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속 배우고 사람들과 그 배움의 과정을 공유한다면, 누구보다 열린 사고와 관점으로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5) 자원이 되어주세요

좋은 지지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자원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6)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가진 고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답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7) 가정하지 마세요

잘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 어림짐작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이럴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시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와 모욕감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내담자가 상담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담자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례 유형
/ 상담 가이드

성소수자 주거 불안 사례 유형 및 정책 제안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실제 마주하는 다양한 주거 불안 사례를 소개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주거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까지 포함됩니다. 이성애 규범과 성별이분법은 원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학과 진로, 취직 과정 속에서, 학교와 군대, 회사 안에서, 가족 구성과 결혼, 출산, 장례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일상 곳곳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살아갈 집을 구하고 계약할 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고한 이분법적 성별 규정은 주거 공간을 찾고 계약할 때에도 적용되며, 주거 정책을 이용하는 데에도 장벽으로서 작동합니다.

1. 일상에서 겪는 주거 불안

여기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원가족 집에서 겪는 주거 불안과 원가족으로부터 독립 이후 가족과 지인 그리고 이웃 관계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주거 불안 사례들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성소수자들의 주거 독립 희망 사유: 원가족과의 관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를 독립한 응답자 1,784명의 최초 독립시기는 평균 21.8세입니다. 연령 제한이 없었던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2021)의 조사 결과 독립시기는 평균 23.5세로 조금 더 높은 연령에 독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20대 초반에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 원가족으로부터 적정 독립 나이가 26.1세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소수자들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이 독립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4%였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경우 62.3%,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경우 54.2%,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44.8%로 성별정체성에 따라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와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에 참여한 분들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호르몬을 자가로 맞고 있어서 일단 호르몬이나 주사기 등을 집에 보관해야 되고 숨기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하는 단점이 있고요. 전에 한번 정체성 관련해서 부모님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감기 때문에 약 봉지가 많았는데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려 놓으니까 어머니께서 호르몬이냐고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 아버지는 (성별)정정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리신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웬만하면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나가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9세

“사실 가정폭력은 그 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 “전부 죽여버리고 싶다.” 그것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여 버리고 싶다.” 그걸 정말 온갖 그런 말들이 나오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런 걸 보면서 당일에 좀 결심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에 더 있는 거는 이제 진짜 위험하다.’ (...) 그런 위협을 느껴서. 가출을 당일에 결심을 했던 거였어요.”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0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원가족에게 드러났을 때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지속해서 노출되면서 집은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가출(탈가정)을 결심하거나 “쫓아내시기 전에”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발적 독립인 것 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안전한 공간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 직전에 만약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나는 100퍼센트 배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불화를 겪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 스스로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피하고 싶었고 여러모로 좀 불안했어요.”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9세

“예전부터 들키면(아웃팅되면) 그냥 죽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동성애) 반대집회까지 나가는데, 제 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거 생각하면 (...) 저를 이끌고 그런 집회를 나가서 저를 앞에 세우고 별 짓거리를 다 할 것 같았거든요. (...) 그런 꼴을 당하느니 저는 차라리 진짜...”

시스젠더 여성, 양성애자, 20대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원가족 구성원의 반응을 바탕으로, 응답자들은 본인이 커밍아웃할 경우 벌어질 상황을 충분히 지레짐작하고 있었으며,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원가족 구성원이 알든, 아직 알지 못하든 원가족은 안전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이들에게 탈가정은 자신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사투라 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난다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 상술한 이유로 독립 시기나 독립 형태가 비성소수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커밍아웃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함께 가늠해보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상황은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물리적, 정서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가출(탈가정), 비자발적 독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주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안내해주세요.

- 내담자가 폭력 피해를 겪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과 개입의 방식은 성소수자가 아닌 내담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가능하다면 경찰(112)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기(폭력 피해를 기록해 증거로서 잘 남길 수 있도록 조력하기) 등의 조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 인식되는 원가족이 성소수자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주세요.

- 성소수자 내에도 다양한 정체성이 있으며, 정체성 별로 겪는 문제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내담자의 경우 씬터나 고시원 등 긴급 주거를 구하는데 사회적 장벽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이웃과의 관계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의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2021)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는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6.6%는 ‘인사 정도는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이웃의 간섭이 불편해서’가 43.0%로 가장 높았고, ‘집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가 24.1%, ‘의도치 않은 아웃팅 때문에’가 1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에게 ‘성정체성으로 인해 사는 곳에서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묻자 25.6%가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성별정체성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거주지에서 불편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 트랜스젠더가 42.7%,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37.1%, 시스젠더 여성이 30.2% 응답률을 보고했습니다.

‘주거 관련 불편한 경험’의 1순위로 ‘집주인과 이웃에게 정체성을 숨기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관계를 최소화’하였다는 응답이 30.6%로 나타났으며, 2위로 ‘가족이나 지인이 집에 방문했을 때 성정체성을 노출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추었다’는 응답이 25.7%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참여자들이 위와 같이 응답한 것의 배경에는 ‘이웃들의 불편한 시선, ‘이성애 규범적 언설’, ‘아웃팅 위험’, ‘동거 관계에 대한 추궁 및 사생활 간섭’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건 당연히 (...) 그리고 당연히 애인이라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20대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집에 계속 못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그 상대방(예전 애인)이 우울하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웃한테 해코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겪은 적도 있고.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집 앞에서 손잡거나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고. (...) 집주인이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시스젠더 여성, 범성애자, 20대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 (온라인)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구경을 좀 했어요. 여기 주변에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아파트 단톡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작년 5월 달에 성소수자 코로나 해가지고, 이태원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온라인 채팅방)서 혐오 발언들이 나왔는데 기분이 좀 나쁘고 속상하니까 “게이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집중포화를 받은 거예요. “게이들이 잘못된 거지! 뭐! 이런 코로나 시국에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너 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동까지 썼었거든요. (...) “ㅇㅇ동에 사는 너가 게이구나!” 이렇게 뭐 한 열댓 명 정도가 욕..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 좋은 말을 계속하니까 좀 많이.. 그리고 저는 차에다가 그 레인보우 플래그, 플래그.. 이걸 저기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운전.. 거기 보이는 데다가. 그것까지 올려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걸 제거했어요. 혹시 무슨 해코지 당할까 봐. 그 때 좀 받았던 충격이 좀 있어 가지고.”

시스젠더 여성, 범성애자, 20대

응답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이웃으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아웃팅과 해코지를 당할까 봐, 또 사회적 혐오가 문턱을 넘어 직접적인 괴롭힘으로 나타날까 봐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긴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정주할 집을 구하고, 자신의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차별로 인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간 구성에서의 자기검열

성소수자들은 자신만의 공간조차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꾸미는데 주저함을 갖습니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방문으로 의도치 않게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도 ‘공평한’ 공간 나누기로 골머리를 앓고, 누구라도 집에 온다고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날만한 물건을 숨기기에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이 집을, 공간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파트너와의 어떤 관계성이 드러나잖아요. (...) 사실상 너무 신혼부부의 집인 거잖아요. (...) 이 세 방이 같은 평수로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큰 방을 쓰고 누구는 작은 방을 쓰는 건 조금 ... 엄마 안 될 거 같다. 왜냐면 월세를 똑같이 냈는데. (...) 감정 상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공간을 이렇게(함께) 쓰는 게 나을 거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사 전부터 미리 좀 아무렇지 않게 고민처럼 이야기를 해냈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치밀해야 돼요. 진짜 모든 게.”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어머나가 오는 날이면 모든 물건을 숨기고 그랬어야 돼요. 커플북도 있는데 그것도 숨겼어야 되고, 뭐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모든 걸 숨겼어야 하죠. 정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늘 스트레스였어요.”

시스젠더 여성, 범성애자, 20대

집은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가구와 각종 물건은 그 공간에 사는 이들에게 가장 유용하게끔 설계, 배치됩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이 집을 방문할 때를 대비해 정체성,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숨기게끔 부단히 애를 쓰곤 합니다.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난다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 가장 먼저 차별을 겪은 내담자의 감정을 살피고 공감해주세요. 대응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 용기를 지지해주시고, 대응할 수 없었다면 왜 할 수 없었는지를 듣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변인들과의 문제가 당사자에게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체성으로 인한 혐오와 폭력,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어려움이 겪고 이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이 명백한 차별이며 때로는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혐오와 차별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내담자가 스스로를 지킬 방법과 제발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주세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황과 내담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민이 든다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에 자문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상황에서의 사례 유형

여기에서는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2021) 보고서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상황에서의 사례 유형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세입자이자 성소수자인 사람들은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파트너 관계 또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등을 계기로 아웃팅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 연장을 거절당하는 상황, 이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1)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불이익 우려

상동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이 주택임대차계약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는 날에는 전월세 재계약을 거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계약할 때 알게 되면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쿼어이지 않는다면...”

N씨,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즉,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는 거절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퇴거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소수자인 세입자에 대한 차별이 갱신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난다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차별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신이 가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함께 거주하게 된 반려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참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①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③ 임대인이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제공한 경우
- ④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⑤ 임차목적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한 경우
- ⑥ 임차주택이 멸실 된 경우
- ⑦ 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⑧ 임대인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⑨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2)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이익 우려

무사히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성소수자들은 집을 구하고 계약할 때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숨기곤 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O씨의 경우 집 계약을 할 때 “집 주인이 파트너와 관계를 물어볼까 조마조마했”던 감정을 경험했으며, E씨는 “파트너를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에 대해 곤란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H씨 또한 파트너 관계를 속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들이서 집을 구하려고 시도해보니까 딱 반응이 “누구인가요?, 자매인가요?” “친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런 식의 대화들... 제가 기분이 안 좋고, 계속 집주인 하고도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은 아니죠. 뭔가를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N씨,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특히 법적 성별을 정정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집 계약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표현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상황은 임대차 계약 시 아웃팅으로 이어져 계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고서 내 설문조사 결과에서 트랜스젠더가 다른 성소수자 집단보다 집 계약 시 ‘자신 혹은 파트너의 정체성을 숨겨야 해서 불편하다’의 응답률이 52.2%로 높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불안 경험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많은 트랜스젠더 참여자들이 집 계약 시 법적 성별을 문제로 아웃팅 위험에 노출되거나 계약을 파기 당한 일들을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MTF 트랜스젠더입니다. 주거계약 시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탓에 아웃팅이 됐습니다.

계약을 진행 중 계약서엔 남자로 되어있었지만 보이는 모습은 여성이라 바로 트랜스젠더인 걸 알아차리셨고 계약이 파기된 경험이 1회 있음.

(집주인) 남자예요? 여자예요? 신분증 좀 보여 주시겠어요?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정주환경이 불안정한지 여부를 질문했을 때, 응답자 중 9.9%는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퇴거 우려 때문에 정주환경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성정체성으로 인한 이웃으로부터 차별과 퇴거’ 우려가 31.8%로 시스젠더 여성/남성보다 더 불안정한 정주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구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트랜스젠더 D씨, F씨, I씨 모두 부동산 집 계약 시 성별 문제로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I씨의 경우 현재는 법적 성별을 정정한 상태지만 과거 성별 정정 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웃팅 우려로 계약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차별과 불편함 중에 “계약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트랜스젠더에게 임대차 계약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로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UN 주거권 특별보좌관 또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보는 트랜스젠더가 “주거에 접근할 때 거대한 장벽을 마주”한다고 보았으며,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의 성별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때, “성별정체성이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을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난다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파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가 겪는 일은 몹시 불합리한 것이며,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태도는 세입자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행위임을 알아주세요.

- 계약을 하는 것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단지 법적 성별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면, 이에 관한 차별 또는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공공질서법에 따라 종교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위협적인 말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 해당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¹ 하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한 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 소송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존엄이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낀 사람의 슬픔과 울분에 함께 공감해주시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거절당한 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법 체계가 아직까지 이러한 인권 침해,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 및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이미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 때문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이가 상담을 신청한다면, 안전하고 평등한 공인중개소의 목록을 소개해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민달팽이유니온은 대학가 인근 공인중개소를 대상으로 착한 공인중개소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연령이 어리다는 것, 주택임대차계약 경험이 적다는 것을 악용하여 불평등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지 않겠다고 함께 약속한 공인중개소의 명단이었습니다. 아마 몇몇 상담센터에서는 이미 충분히 세입자의 여건과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공인중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명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 내 평등하고 안전한 공인중개소 명단을 아카이빙해보시길 권합니다. 가난하거나, 어리거나, 연고가 없거나, 성소수자거나, 외국인이거나...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차별을 일삼는 공인중개소가 아닌 곳을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1 혐오표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까', 이승현,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인권>, 2019.03.

3. 정책과 제도 이용에서의 사례 유형

여기서는 성소수자가 성별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주거 공간에서 겪는 불안, 주거정책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데에서 겪는 주거 불안 사례를 소개합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이분법으로 구성되는 다중이용시설(고시원, 기숙사, 쉼터 등)의 접근이 제한되며 주거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시스젠더는 성별이분법적 공간에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불편함, 제도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성소수자는 국내 주거정책에서 빗겨나며 주거 불안을 겪습니다. 국내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성애/혈연관계를 기초로한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구의 재생산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주거 관련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많은 주택정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정책에 포함되지 못하며 주거 불평등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1) 성별이분법으로 나뉜 주거공간

법적 성별을 정정하지 않았거나, 의료적 트랜지션 과정을 밟고 있는 트랜스젠더 등은 성별이분법으로 나뉜 기숙사, 고시원 등에서 어떤 공간에도 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또한 성별정체성, 젠더표현에 대한 강제 등으로 다른 시스젠더 성소수자보다 이른 나이에, 충분한 독립 준비 없이 원가족으로부터 탈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적절히 지원할 주거복지 자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탈가정 청소년이나 후기 청소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 역시 대부분 성별이분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나마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고시원, 학교 기숙사 역시 성별에 따라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탈가정 트랜스젠더들이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며 주거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실은 가을 학기에 기숙사를 들어갔다면, 제가 동아리 방에서 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는 했어요. 가을 학기에 기숙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도 됐었고. 그러니까 뭐 월세를 구하더라도 그동안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계약을 하거나, 기숙사가 좀 더 저렴하니까 기숙사에서 계속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저로서는 이제 기숙사가 아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아니었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기숙사 시설이 성별이 분리되는 공간이잖아요. 남녀 성별이 분리된 공간이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실도 있는데, 1인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성별을 분리를 해놔서 남자건물, 여자건물을 따로...”

D씨,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0대

시스젠더 역시 성별이분법적 공간 안에서 많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가정의 방식으로 기숙사를 택하는 성소수자들도 있지만, 공동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 될까봐 쉽사리 입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저렴한 주거공간인 기숙사를 선택지에서 지우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너, 기숙사 들어가라, 기숙사가 더 싸니까.” 근데 제가 아예 말했어요. “나는 다른 남자와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기숙사를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내 선택지가 아니다. 난 무조건 자취를 혼자서 해야 한다. 동거도 안 된다. 일단 혼자 살겠다.” 막~ 이러면서 엄청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스씨,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대

설사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단속하는 자기검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지향이 룸메이트나 지인들에게 노출될까봐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단속하고 위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기숙사 퇴소로 이어져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테면 어떤 뭐가... 친구들이랑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보일까봐. 뭐~ 이름테면 옛날에는 ‘오렌지동’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음 카페 ‘성소수자들 카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책상에서 하고 싶는데, 굳이 침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 보이는 각도로 이렇게 막하고 있어야 한다든지... 굳이 막~ 선 다 끌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이제 방에서 편하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이제 뭐 룸메이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여 했던 것 같고... (중략)
자물쇠를 걸어놓고 그랬어요. 서랍에. 그러니까 뭐 이런... 성소수자 쿼어 퍼레이드 이런데를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올 거잖아요. 이것저것 굶즈나 이런 것들...”

J씨, 시스템더 남성, 게이, 30대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난다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차별과, 그에 대한 감정에 함께 공감해주세요. 사실 기숙사, 고시원, 쉼터 등 모든 주거 공간은 최저주거기준에 맞춰 적절한 넓이의 1인실로 설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 기숙사, 고시원, 쉼터 등에서 거주할 때 성별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인해 불편함이 크고, 이로 인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공간이 필요하지만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 있다면 사회주택 혹은 사회적 주택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안내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순위 신청자격 요건이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 청년이라면 수도권쪽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순위(본인과 부모의 소득 월평균 100% 이하), 3순위(본인의 소득 월평균 100% 이하)까지도 선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 임대인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을 스스로 물색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성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년 매입 임대인 경우에도 간혹 입주 가능한 성별이 지정된 건물이 있긴 하나 남녀공동으로 나오는 건물도 더러 있습니다.
- 다만 사회주택 혹은 사회적 주택의 경우 운영주체 별로 각자가 내세우는 공동체적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주택 무지개하우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달팽이집 등)

2) 이성애 혼인 및 혈연관계에 기초한 주거정책에서 배제

국내 주거정책이 이성애 혼인 및 혈연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성소수자들은 주거정책에서 필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고 있는 파트너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받고자 할 때, 이들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제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였다면 전매제한 예외사항으로 공동명의로 가능해 분양 금액을 분담할 수 있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택 청약저축을) 10년 넘게 넣었네요. 근데 그 돈으로는 청약을 하면 문제가, 제가 애인과 같이 공동명의로 안 된대요. 제가 그 친구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전매제한이 걸린대요. 전매제한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이었으면 그 친구와 공동명의를 받고 같이 대출을 했으면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전매제한 때문에 공동명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저 혼자 주택 대금을 다 내야 하는데 그건 무리였어요. 그래서 주택 청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략) 동성혼이 인정됐으면 전매제한도 안 걸리고, 둘의 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매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둘의 소득을 합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망했어요.”

남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이외에도 이성애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신혼부부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이자부담 경감 등)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주거정책 로드맵, 즉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주거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달리) 이제 (이주) 계획을 세워도 모든 걸 저희 둘이, 둘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더 이제 이웃의 신혼부부들을 경계하게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밉고.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어쨌든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주거 정책에서 신혼부부 말고는, 그게 어쨌든 가족관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살고 있고 실상 거의 생활하는 건 다들 바가 없는데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씨,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0대

만약에 저희가 부부로 인정이 됐으면, 청년 대출이 아니라 신혼부부 대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집을 갖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중략) 그리고 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신혼부부가 누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아서.”

B씨, 시스템더 여성, 양성애자, 20대

“사실 부천에 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던 게 있는데, 어차피 실거주, 실제 동거 상태면 신혼부부랑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직전에 그냥 혼인신고서를 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신혼대출이, 신혼특공(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되니까. ‘그렇게 (집 마련해서) 돈 버는 게 이득이다.’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거죠 뭐,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사실 (아파트가) 돈 버는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중략)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중략) 어차피 동거가족도 가족인데. ‘신혼부부의 존재목적은 재생산에만 두는 게 아닌가. 정확히 얘기하면 출산율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니까.”

I씨, 트랜스젠더 여성, 데미섹슈얼, 30대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난다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 이 부분의 상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도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주거정책은 현재 인구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성애 혼인, 혈연 관계를 맺은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만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1인 가구로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동성 파트너나 다른 실질적인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불안정하고 값비싼 민간임대주택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사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오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정 정도의 소득과 자산이 보장될 때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여전히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성소수자들은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함께 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 혹은 일종의 틈새에 안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내담자가 청년에 해당한다면, 전세임대주택 쉐어하우스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층 2-3인이라면 수도권에서 1.5억~2억 사이에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² 혹은 사회적주택 2인용 호실에 함께 입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는 2인 이상의 공동체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알려드려요 > 전세임대 사업안내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기관/단체명	웹사이트/연락처
가족구성권연구소	familyequalityrights.org familyequalityrights@gmail.com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dawoom-t4c.org dawoom@dawoom-t4c.org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blog.naver.com/daejeonqueer solongoswithqueer@gmail.com
무지개인권연대(대구)	www.facebook.com/LGBTdaegu 053-255-6559
민달팽이유니온	minsnailunion.net/info minsnailunion@gmail.com 070-4145-9120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www.facebook.com/QueerInPusan queerinpusan@gmail.com
비온뒤무지개재단	www.rainbowfoundation.co.kr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02-322-9374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ysnanum.or.kr ysnanum@gmail.com 02-790-1968
성소수자 부모모임	www.pflagkorea.org rainbowmamapapa@gmail.com 02-714-9552
성소수자 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chingusai.net/connect 1577-0199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모임, 다다름	linktr.ee/QALLY

기관/단체명	웹사이트/연락처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연구회	sogilaw.org
언니네트워크	www.unninetwork.net unni@unninetwork.net 02-3141-9069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핑동	www.ddingdong.kr LGBTQ@DDingDong.kr 02-924-1224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www.transgender.or.kr tgjogakbo@naver.com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net contact@chingusai.net 02-745-79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sangdam.org 02-703-3542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	www.ksrcr.org ksrcrmember@naver.com 0505-896-8080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gbtpride.or.kr lgbtaction@gmail.com 02-715-9984

성소수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제안

1. 사회적 소수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사회적 소수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라는 지향과 감각은 여러 이유로 한국 사회에 머무르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자료조차 없는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성소수자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 지향과 감각을 공유하는 사회는 성소수자의 상황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데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1조 1에서 권고하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극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거권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서 거주가능성(habitability),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점유안정성, 주거비의 적절성 등을 제대로 된 주거권을 구성하는 요소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차별과 실질적 차별을 모두 철폐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사회 보장, 생식 건강, 주거와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성소수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

여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성소수자가 주거권을 향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의 제정 노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강조하는 성소수자 주거권이라는 나무를 심고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2014년 7월에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주관으로 진행된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하며 “거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혈연, 혼인 외 다른 관계에 대해, 실제로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보장해야 할 내용으로 “동거 전후의 재산 문제, 동거 관계 내의 가정 폭력의 문제, 의료결정권, 공공 주거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접근권 등의 문제”라고 명시합니다.

2020년 6월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앞서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7번째 입법 시도로, 이 법안은 23조에서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는 토론회의 한 토론자는 “생활동반자의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전대 및 양도에 있어서의 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 시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8호 7의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차별과 실질적 차별을 모두 철폐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사회 보장, 생식 건강, 주거와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가 주거권을 향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가족’ 개념의 확장을 통한 성소수자 사회권 보장

1)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며, 성소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애와 혈연 가족 중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고,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정상가족 중심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 성소수자 가족 사이의 주거권 승계에 대한
동등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성소수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같이 살던 성소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없어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함께 동거하던 성소수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 파트너에게 임차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들이 주택임대차계약 등 집에 대한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성소수자에 대한 주거지 박탈 및 임차 거절 등의 차별 행위 금지

1) 쉼터, 민간임대 등 모든 형태의 주거지에 관한 차별 금지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또한 “쉼터, 민간임대 등 모든 형태의 숙박시설에 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소수자들은 쉼터나 민간임대주택 등의 계약 체결 및 갱신 과정에서 거주 또는 임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과 신분증의 불일치에 관한 차별 금지

트랜스젠더가 신분증의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차별적인 태도에 따른 임대 거부에 대해 대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성별이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주거 공간들(쉼터와 같은 주거시설, 고시원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참고한 자료

-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2022. 『"나같은 사람이 혼자 아니구나":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 ◎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민달팽이유니온. 2021. 『청년주거상담매뉴얼』.
- ◎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2021.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통,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2018.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 ◎ 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9.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발행연월 2022년 12월

펴낸곳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가장자리의 지리를 연구하는 민수
주거권 활동가 김경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김보미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동 / 아델(정용림)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 자깨오(민김종훈)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 조이
민달팽이유니온 / 지수(김솔아)

자문 김혜민 (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전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디자인 소리 (한국청소년년감염인커뮤니티 알)